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제안에도...광주·전남 의료계 '냉담'

정부 수련 특례·입영 연기 제시...사직 전공의들 "현장 복귀 없을 것" 발표 내용 신뢰 못하고 비전 제시 없어...레지던트 모집도 난항 예상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광주·전남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입영연기 혜택까지 제시했어도 "현장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사회 분야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Zero Base·원점 재검토)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안대로라면 5058명이 되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최 대행은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학교의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면서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며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 의료 강화하는 의료 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사직 전공의 복귀제한을 풀고 입영을 미뤄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내엔 같은 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사직 전공의에 한해 올해 3월 당초 소속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해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수련을 마치고 의무장교 등으로 입대하는 입영연기 혜택도 제시했다. 전공의들이 사직할 경우엔 가까운 시일 내 군의관·공보로 입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대

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대다수 지역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의료계에 대한 비전 제시 없어 단순히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A씨는 "사직의사를 밝힌 전공의 중 입장을 바꿀 이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직 전공들 중에는 조기 입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1년간 정부의 입장이 너무 많이 바뀐 상황에서 말만 앞세우는 정부의 태도에 선뜻 의료 현장으로 복귀를 선택하는 전공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련시간을 투자해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수련을 받을 텐데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기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한 발 양보하는 모양새지만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현장 현실화'에 대한 대책이 빠진 '회유책'으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윤하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계기는 의대정원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보면 의료현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각각 살길을 찾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개선 요구사항은 최소한 필수의료과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조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사직 전공의도 "특히 필수과 전문의와 일반의의 수입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필수과는 의료사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전공의들이 정신없이 수련받으며 살던 때와 달리 사직한 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려운 상



13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바빠 움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레지던트 모집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14일부터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이 시작되고, 다음달 3일부터 인턴을 모집 하지만 지원자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게 지역 의료계의 예상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정부가 수련특례 등을 제시하며 전공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전공의 모집 대비 지원율은 1.4%(추가 모집 포함 1.6%)에 그쳤

다.

의협이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점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사직 전공의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집행부가 지금까지 추진된 의료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협은 14일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식을, 1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유회책에 대한 입장 등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민 폭행 군의원 제명' 의회 징계는 위법 판결

지역 주민을 폭행한 군의원을 제명한 의회의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양영희)는 A 전 해남군의회가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를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 전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 집행(효력)을 정지시켰다.

A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절입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적재 용품 반환을 요구하며 공상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의회는 지난해 3월 A 전 의원이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권자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며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원인이 피해자가 동의없이 공장 내부를 촬영한 것에서 비롯됐고 피해가 경미한 점,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결과가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이나 공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선거로 당선된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인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거법 위반 혐의 전 광주시의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A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

A 전 의원 등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1월 20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은누리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전 의원 측은 "당시 국민참여방식 경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무소속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며 "당내 경선 운동에 불과할 뿐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서 행사의 하나로 지급한 것이고 지급받은 대상자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도 5·18 위자료 상향...구체적 산정 기준 제시

1심 1000만원→2심 3000만원 상향·구금일수 등 따라 가산

광주고법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에 따른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해 애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1000만원만 인정받았다.

건국대 법대 행정학과 4학년이었던 A씨는 1979년 장기포스 후유증으로 휴학을 하고 광주 분기에서 지내다가 5·18민주화운동을 겪었다.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을 피해 집에 숨어있던 A씨는 계엄군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코뼈가 부

러지고 치아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대학 졸업도 2년 가량 미뤄졌고, 직장을 가지거나 가정을 꾸리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한 때 공직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도움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지난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해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전국 각

급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비교해 서울지방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판결문에 제시했다.

노동능력 상실률 5%에 해당하는 장해(14급)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3000만원을 적용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가산하는 것이다.

추가로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을 가감하고, 군·경에 체포됐을 경우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45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위자료 지급이 지체됐다"면서 "그동안 경제상황과 화폐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1심의 1000만원보다 증액한 30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